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1999 · 6 · 7 규칙 제165호 개정 2004 · 6 · 21 규칙 제275호 개정 2009 · 1 · 12 조례 제742호 (이천시 도자진흥재단지원 조례) 개정 2009 · 1 · 12 규칙 제384호 일부개정 2013 · 5 · 16 규칙 제480호 일부개정 2019 · 5 · 8 규칙 제652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5·16〉
- **제2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4·6·21, 2009·1·12, 2013·5·16, 2019·5·8〉
 - ② 위원장, 사무국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5·16, 2019·5·8〉
 - 1.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임직원
 - 2. 이천문화원 임직원
 - 3. 한국예총이천시지회 임직원
 - 4. 한국도자재단 직원
 - 5. 도예관련 전문가, 행사기획 전문가
 - 6. 관계 공무원

[제목개정 2013·5·16]

[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·5·8]

- **제3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〈개정 2013·5·16, 2019·5·8〉
 - 1. 이천도자기축제 추진계획수립(예산집행계획 포함)

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

- 2. 이천도자기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
- 3.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
- 4. 그 밖에 이천도자기축제관련 실무 업무
-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한다)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위원장이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(이하 "추진위원장"이라 한다)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3·5·16, 2019·5·8〉

[제목개정 2013·5·16]

[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·5·8]

- 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5·16〉
 -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5·16〉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5·16〉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제목개정 2013·5·16]

제7조(간사)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도자 기축제 담당팀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9·5·8〉

[전문개정 2013·5·16]

제8조(내부운영규정 등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·5·8]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부칙 〈2004 · 6 · 21 규칙 제275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·1·12 조례 제742호, 이천시 도자진흥재단지원 조례〉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「이천시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(재)세계도자기엑스포직원"을 "도자진흥재단직원"으로 한다.

부칙〈2009 · 1 · 12 규칙 제384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·5·16 규칙 제480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 · 5 · 8 규칙 제652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